특허정보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상표라, 상표등록을 받은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 각각 정의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을 두었다.

특허법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발명"이라, 특허를 받은 발명을 "특허발명"이라 각각 정의하고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 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 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 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을 과할 수 있는 벌칙을 두었다.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이라, 의장등록을 받은 의장을 "등록의장"이라, 의장심사등록 및 의장무심사등록을 "의장등록"이라,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의장무심사등록"이라 각각 정의하고, 의장 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의장등록 또는 의장등록 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